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
|------|-----|
| 의안번호 | 444 |
|------|-----|

제출년월일 : 1997. 11. 19.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제안이유

- 현행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일원화되어 있는 관련법규를 일원화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위임조례중 권한 위임사항 재정비(별표)
 - . 신설 - 농지전용 신고(법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41조)
건축물대장 기재, 말소, 변경, 정정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규칙제2조, 제7조, 제8조, 제9조)
- 이원화된 위임조례 일원화(안제2조 제2항)
 - .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 폐지하고 기존내용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에 명시

3.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고성군사무위임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6조" 다음에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을 삽입한다.

제2조 제1항중 "별표1과"를 "별표와"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 제18조 및 영제2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민원실)에서도 시행할수 있다.

1. 법제17조의 8 및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2. 법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1991. 3. 9 제1245호)는 이를 폐지한다.

권한 위임 사항

| 소관별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비고 |
|-----------|---|---|----|
| 문화 공보실 | 1. 공연신고 | 공연법 제14조 제1항 | |
| 내무과 | 1.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2. 소속공무원 전.출입 제청 3. 소속직원의 출장명령 4. 소속직원의 당직명령 5. 소속직원의 휴가처리 6. 소속직원의 사무인계인수 7. 문서의 보존 및 폐기 |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8조 고성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7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4조 고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제8조 사무관리규정 제28조 및 제31조 | |
| 재무과 | 1. 군세징수 2.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3. 관내공공시설과 재산관리 4. 군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 고성군세조례 제6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2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3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 |
| 지적과 | 1. 건축물대장 기재(말소) 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2.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정정) 신청서 접수및 현지조사 - 인계한 대장에 한함. |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조 및 제9조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및 제8조 | |
| 사회 복지과 | 1. 생활보호신청(변경) 및 조사 2.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관리 3. 매장. 화장. 개장신고 4. 이·미용업소 영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5. 자동판매기 영업신고 6. 음식업영업(폐업. 재개업) 허가 | 생활보호법 제18조 및 제23조 생활보호법시행규칙 제16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 |

| 소관별 | 위 임 사 부 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비고 |
|-----|--|--|----|
| | 7. 여인숙 영업신고 8. 여인숙 휴·폐업 신고 9. 이·미용업 신고 10. 이·미용업 휴·폐업 신고 11. 식품영업관련 출입·검사·수거등 12. 공중위생업소 출입·검사 13. 식용얼음 판매신고 14. 집단급식소 신고 15. 우유류 판매업신고 16. 영업자 지위승계 17.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관한사항 (읍면허가. 신고분에 한함) 18.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청문에 관한사항 (읍면허가. 신고분에 한함) 19. 세탁영업신고 관리 20.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21. 장애인 등록신청 |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4조 제2항 공중위생법 제10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17조 공중위생법 제20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2조 식품위생법 제25조 및 공중위생법 제8조 식품위생법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5조 식품위생법 제64조 및 공중위생법 제24조 공중위생법 제4조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2항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 |
| 환경과 | 1. 인분비료 사용금지 지도단속 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관리운영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4. 공중화장실 지도·점검 (도·군립공원, 공공체육시설, 국민관광지 제외) 5. 우수정화조 및 분뇨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군허가대상의 건축물) 6.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허가 |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성군청소종사원복무규칙 제1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고성군우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제11조 | |

| 소관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비고 |
|-------|--|---|----|
| 산업과 | 1. 농지전용신고 | 농지법제37조및 동법시행령 제41조 | |
| 산림과 | 1. 입산신고 | 산림법 제98조 제125조 | |
| 수산과 | 1. 어업신고 | 수산업법 제44조 | |
| 건설과 | 1.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일시점용 허가 | 도로법 제40조 제1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 |
| 지역개발과 | 1. 주택상환금 징수 2. 건축신고 3. 무허가 수도단속 4.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및 상수도 유지관리 5. 가설건축물 신고 6. 토지형질변경허가 (농지전용신고, 건축신고 범위내) | 고성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13조, 제14조 건축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18조 고성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건축법 제9조, 도시계획법 제4조 농지법 제37조 | |
| 보건소 | 1. 대마취급자의 허가 2. 대마재배자의 보고 | 대마관리법 제5조 제1항 대마관리법 제7조 | |

신 · 구조문 대조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고성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 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임사항) ① <u>군수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u></p> <p>② <u>군 및 타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와 같다.</u></p> | <p><u>고성군사무위임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공무원법 제6조,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의 -----</u> ----- ----- -----</p> <p>제2조(위임사항) ①----- ----- <u>별표와 -----</u></p> <p>② <u>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법제18조 및 영제25조,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군(민원실)에서도 시행할수 있다.</u></p> <p>1. <u>법 제17조의 8 및 영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u></p> <p>2. <u>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전산 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u></p> |